

제157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2. 9. 16.(금)

□ 안건명 :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(3~5단계) 설계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157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,
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 반영하는 조건으로
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존 등산로와 인접하여 계획된 데크로드는
가급적 기존 등산로를 활용한 노선이 되도록 검토할 것
- 장애인 관련 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무장애 숲길 이용 시 필요한
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사에 반영할 것
- 사업계획구간 내 휴게시설이 부족하므로 숲길 이용자가 충분히 사용할
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계획하여 반영할 것
- 서울둘레길과 무장애 숲길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는 이용자를 위한 안내
시설을 충분히 계획할 것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- 안건명 :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(3~5단계) 설계심의
- 분 야 : 조경

항 목	채 택 의 견	비 고
계획성	<p>1. 의자류 휴게시설 (도면번호 004, 111~119, 149~166, 194~20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~5단계 사업구간의 총 거리가 4.95km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류 시설이 부족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이용시 많은 불편이 예상됨 - 특히 3단계 구간의 경우 1.96km거리에 의자 2개소, 연결의자 8m가 설계되어있으나 초입부의 데크쉼터(A,B) 2개소와 해맞이공원 하단부 데크참(G) 1개소로 설치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있는 데크참에 등의자를 추가하거나 데크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함. <p>2. 초류종자파종 (도면번호 47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에 맞는 향토초종으로 종자 종류와 배합을 명시 필요 	

2022년 9월 16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- 안건명 :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(3~5단계) 설계심의
- 분 야 : 조경

항 목	채 택 의 견	비 고
계획성	1. 시설계획 부분의 추가적 검토 (1) 기존 등산로와 인접하여 계획된 데크로드는 가급적 기존 등산로를 활용한 노선이 되도록 검토 (2) 보행 편의를 위해 휠체어가 상호 교행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베이를 만들도록 검토	
시공성	2. 시공시 훼손 수목에 대한 <u>생태적인</u> 이용대책 마련 (1) 시공시 발생하는 훼손 수목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검토 (2) 재활용 후 잔여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시설 또는 곤충류 서식공간 등 생태적으로 활용하기 바람	

2022년 9월 16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- 안건명 :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(3~5단계) 설계심의
- 분 야 : 조경

항 목	채 택 의 견	비 고
계획성	1. 3단계 시설물 포장계획도-10(도면번호 149) 기존 목재웬스, 데크계단 철거 부분의 데크로드와 교차 되는 부분 마감처리 방향 설명할 것 2. 5단계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-11(도면번호-150) 데크쉘터-C 육각형 형태를 사각형 형태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할 것	
안전성	3. 4단계 시설 및 포장계획도-33(도면번호 199) 진입데크 F 형태 재검토할 것 (가각부가 좁아서 이용자 불편 예상됨)	
환경성	4. 데크쉘터 구간에서 기둥이 심하게 노출되는 구간은 경관식재 바람	

2022년 9월 16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- 안건명 :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(3~5단계) 설계심의
- 분 야 : 토목시공

항 목	채 택 의 견	비 고
계획성	1. 새벽 또는 저녁 둘레길 등산객을 위한 데크쉼터에는 경관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을 검토 할 것	
시공성	2. 데크로드 철구조물의 시공기준, 검사기준, 허용오차 등을 작성하여 공사시방서를 보완토록 조치하고, 철구조물 용접기준 및 도장기준 등에 대한 공사기준을 추가하여 제시할 것 3.목재의 시험 및 방부·방충은 KS F 2201(목재의 시험방법 통칙)~KS F 2215(목재의 마모시험방법), KS F 2219(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), KS F 2220(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방법)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·방충처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시방서에 반영할 것	
안전성	4. 데크구조물 기초는 잡석 T=150mm + 300mm × 300mm 콘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으나, 계곡부에 기초 공사를 수행 후 세굴 시 기초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니, 이에 대한 보강 도면을 보완 수록할 것	

2022년 9월 16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- 안건명 :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(3~5단계) 설계심의
- 분 야 : 유관부서

항 목	채 택 의 견	비 고
계획성	1. 3단계 사업구간(봉수대 ~ 수국사) 중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 전 협의매수 또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토지소유자(이해관계인)의 토지사용승낙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2. 정상부(봉수대 ~ 수국사)까지 급경사 사면을 극복하기 위해 계획된 길고 복잡한 노선은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산림경관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정상부 연결성에 대한 타당성과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3. 무장애숲길 조성 후 이용률이 떨어지는 기존 등산로와 불필요한 샛길은 적극 (물리적)폐쇄하고 수목식재 등을 통해 식생복원 할 것 4. 서울둘레길과 무장애길이 서로 만나고 분기되는 지점에는 이용자를 배려하여 표지판 등 안내체계를 충분하게 구축할 것	
환경성	5.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수목제거 지양할 것 (1) 도목 또는 고사목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, 노선과 중첩되는 수목은 데크에 수목보호호를 만들어 수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	
기타	6. 공사 중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대한 정보를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안내 및 홍보 철저 7. 공사 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회로 등 대체노선 마련 및 안내 8. 작업 완료 후 작업현장 안전조치(공사현장 안전띠·라바콘 설치, 자재관리, 야간 인식을 위한 반사체 부착 등)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 철저	

2022년 0월 16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- 안건명 :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(3~5단계) 설계심의
- 분 야 : 공통

항 목	채 택 의 견	비 고
계획성	1. 시·종점에서 무장애 숲길로 접근이 가능하나, 한 번에 전 구간(1~5 단계, 6.75km)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도 있을 수 있으니 구간 중간 중간 산자락에서 무장애 숲길로의 접근 가능한 동선을 확보하여 일부 구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2.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계획하여 반영할 것 (1) 무장애 숲길의 경우 조성 후 장애인 이용이 증가하면 화장실, 전동휠체어 충전기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므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	
시공성	3. 수목 제거 위치에 데크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 뿌리분을 제거하고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할 것 (1) 내역서에 음발생억제품은 반영되어 있으나 벌근품은 미반영 됨	
안전성	4. 지반조사결과 일부구간 연약한 붕적토층이 존재하므로 현장 시공 시 현장재하시험을 통하여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기초의 침하 현상 확인 후 시공하고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할 것 (1) 소요하중에 따른 지지력 부족시 치환 또는 내림기초 적용 검토 5. 집중 폭우로 인해 지반침하 또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숲길이 파손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할 것 6. 숲길 조성 구간이 산의 정상 부근 능선을 따라서 형성되며, 일부 구간별 경사가 급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므로 시공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계획을 수립할 것	
경제성	7.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것 (1) 100억 원 이상 산출 시 설계경제성(VE) 검토를 이행할 것	

2022년 09월 16일

심의위원 :